

업계소식- 2/7/2017 - 속눈썹 파마

이미용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면허소지자들에게 주의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캘리포니아 사업 및 전문업법 7316 항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속눈썹 파마 시술은 면허를 소지한 미용사와 이발사가 할 수 있는 영업 행위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다음은 해당 부분입니다.

- (a) **이발** 행위는 다음의 행위 모두 또는 다음 항목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행위입니다.
- (3) 잔털을 태워 제거하기(Singeing), 샴푸, 머리 정리, 헤어드레싱, 컬링, 웨이빙, **파마 (Chemical Waving)**, 헤어릴렉싱, 머리 염색, 헤어토닉 도포.
- (b) **미용** 행위는 다음의 행위 모두 또는 다음 항목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행위입니다.
- (1) 헤어를 어떤 방식으로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시행하는 어레인징, 드레싱, 컬링, 웨이빙, 머신리스 파마, **파마**, 클렌징, 커팅, 머리감기기, 헤어 릴렉싱, 잔털을 태워 제거하기(Singeing), 탈색, 틴팅, 헤어컬러 코팅, 스트레이트닝, 염색, 헤어토닉 도포

미용사가 얼굴 (속눈썹)의 미용을 위해 파마 용액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케라틴 성분 기반의 속눈썹 강화 제품 같은 화장품을 사용하는 경우처럼 그러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피부 미용사의 영업 행위 범주에 속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사업 및 전문업법 7316 항 해당 부분을 참조하십시오.

- (c)(1) **피부미용**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B) 얼굴, 목, 팔 또는 상체의 미용을 위해 화장품, 살균제, 로션 또는 크림을 사용하는 행위.

관련사항:

위원회에서 모든 면허 소지자들에게 알려 드립니다. 속눈썹/눈썹 틴팅은 현재 모든 면허 소지자에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원회의 업계 소식(Industry Bulletin) - 속눈썹/눈썹 틴팅에 관해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http://www.barbercosmo.ca.gov/forms_pubs/publications/lash_browtint.shtml.